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7 발의연월일: 2024. 6. 25.

발 의 자:구자근・서범수・김선교

인요한 · 김석기 · 강대식

박덕흠 • 권영세 • 박준태

강명구 · 김성원 · 유상범

곽규택 • 정점식 • 김도읍

최수진 · 김장겸 의원

(17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6·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·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,456명이며, 전시납북자로 심 의·의결한 건은 총 4,777명에 달함.

「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을 통해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했지만 실제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규정하지않고 있음.

이에 반하여 「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 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을 통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, 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을 통해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6·25전쟁 납북자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.

이에 6·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도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신설 등).

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자가족의 심사·결정에 관한 사항

7의3. 6·25전쟁납북피해자에 대한 제8조의2에 따른 위로금 또는 제 8조의3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

7의4. 그 밖에 6·25전쟁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위로금) ① 6·25전쟁납북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한다. 이 경우 가족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시납북자가족 중 납북자의 자녀와 형제자매로 한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기준·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8조의3(의료지원금) 위원회는 6·25전쟁납북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족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시납 북자가족 중 납북자의 자녀와 형제자매로 한정한다.
- 제8조의4(위로금등의 지급신청) 6·25전쟁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위로금 또는 의료지원금(이하 "위로금등"이라 한다)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
- 제8조의5(결정서의 송달) 위원회가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- 제8조의6(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)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.
- 제8조의7(소멸시효)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 다만,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확정판결이 내려진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조(6・25전쟁납북피해진상규	제4조(6・25전쟁납북피해진상규		
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	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		
회) ① (생 략)	회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	2		
항을 심의·의결한다.	,	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7의2.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		
	자가족의 심사·결정에 관한		
	<u>사항</u>		
<u><신 설></u>	<u>7</u> 의3. 6·25전쟁납북피해자에		
	대한 제8조의2에 따른 위로금		
	또는 제8조의3에 따른 의료지		
	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		
<u><신 설></u>	<u>7의4. 그 밖에 6·25전쟁납북피</u>		
	해자의 보상 및 지원을 위하		
	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	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	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제8조의2(위로금) ① 6·25전쟁납		
	북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는 피		
	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		
	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		
	급한다. 이 경우 가족은 제2조		
	제2호에 따른 전시납북자가족		

<신<u>설></u>

<신 설>

중 납북자의 자녀와 형제자매 로 한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기준·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의3(의료지원금) 위원회는 6

·25전쟁납북피해자 중에서 계
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족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시납북자가족 중 납북자의 자녀와 형제자매로 한정한다.

제8조의4(위로금등의 지급신청) 6 ·25전쟁납북피해자와 그 가족 으로서 이 법에 따른 위로금 또 는 의료지원금(이하 "위로금등" 이라 한다)을 지급받으려는 사 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 <신 설>

<신 설>

<u><</u>신 설>

제8조의5(결정서의 송달) 위원회 가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 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 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제8조의6(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) 이 법에 따른 위 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 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 류할 수 없다.

제8조의7(소멸시효)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 다만,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이 내려진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.